

2024년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(7차) 안내

◎ 교육 협조 사항

- 교육 신청 후 사유서 제출 없이 불참 시, 향후 1년간 교육 이수가 불가능합니다.
- 교육장에는 교육생 외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.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◎ 교육신청 전 유의사항

-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의 경우,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을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.
결혼중개업 결격사유 해당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.
이에 신중한 교육신청을 당부드립니다.

번호	결혼중개업 결격사유	예	아니오
1	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	
2	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		
3	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		
4	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형법」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, 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의2,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,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또는 「출입국관리법」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		
5	외국인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		
6	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		
7	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		

□ **교육일정 : 2024. 10. 23.(수) 09:20~17:30**

시간		진행내용	강사	비고
09:20~09:50	30분	본인확인 및 등록	-	
10:00~12:00	120분	결혼중개업자의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	인권교육 전문강사	
12:00~13:00	60분	중식		개별 중식
13:00~14:00	60분	다문화사회이해	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	
14:00~15:00	60분	결혼중개업 관리제도	법률 전문가	
15:00~16:00	60분	소비자 분쟁 해결 방안	한국소비자원	
16:00~17:00	60분	결혼중개업 실무	관련 실무자	
17:00~17:30	30분	수료(수료증 발급)	-	사전 수령 불가

□ **수료 기준 및 교육 운영**

- **교육 90% 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발급**(개별 과목별 수료 불가)
- 교육 중 소란행위, 교육 방해행위, 교육 태도 불량 등 교육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2회 경고 조치 후 퇴실 및 수료증 미발급 (음주 행위는 경고 없이 즉시퇴실 됨을 안내드립니다.)

□ **교육 신청 및 취소**

- 신청 및 취소 기간

구분	기간	비고
교육 신청	10. 2.(수) 09:00 ~ 10. 11.(금) 17:00	선착순 접수 70명, 이후 대기자 접수 (접수 인원 마감 시 홈페이지 공지)
취소 사유서 제출	10. 2.(수) 09:00 ~ 10. 11.(금) 12:00	미제출 시 향후 1년간 교육 수강 불가

- 신청 및 취소 방법

- 온라인 신청서, 취소 신청서 작성 (공지글 본문 폼 주소 및 첨부 매뉴얼 확인)
- ※ **이메일, 팩스 신청 불가합니다.**
- ※ **안내 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**

□ **교육대상자 발표 : 10. 14.(월) 개별 문자 안내**

□ **교육 준비물(필수)**

○ 신분증(모바일을 포함한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
※ 그 외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○ 필기구, 수료증 보관 파일 개별 준비

□ **교육장소 :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교육장(서울 인근 교육장, 신청자 개별 안내)**

※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함

□ **교육관련 문의 :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부 (02-3479-7777,7778)**

※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문의는 응대가 불가능합니다.